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45 발의연월일: 2024. 9. 20.

발 의 자:김병주·박선원·부승찬

김민석 • 조 국 • 허 영

안규백・황 희・박범계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	제4조(계엄선포의 통고) ① · ②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
	하여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
	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
	<u>다</u> .